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1호 2015. 7. 20.(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4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4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과징금부과등”을 “과징금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자등”을 “공익근무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급액 (건당)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294-27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7. 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7-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56-41, 556-3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94-27 (왕길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8-1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14-11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8-1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14-13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8-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2길 29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0-1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29 (경서동)	2011-02-11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성장을 염원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4-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97 (왕길동)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08-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안길 16 (오류동, 오류동 제조업소)	2009-09-22	단봉로21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3-2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7 (오류동)	2012-10-25	"아무지고 탐스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91 (마전동)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4-9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37번안길 35 (왕길동)	2009-09-22	사월로37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5-3, 125-2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37번안길 35-8 (왕길동)	2009-09-22	사월로37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33번길 16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9-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11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9-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6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8-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74번길 29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윗우물로34번길 16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7-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498-2	웃우물로34번길 16	2015.07.08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당하동 1085-7	청마로 87	2015.07.10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당하동 1098-4	청마로 111	2015.07.10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9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관계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2015.1.1.시행)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자체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 ▶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 “남·여”로 구분하던 조항을 “양성”으로 통합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각 호 조항 신설(제9조 제1호에서 제6호 신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2) 또는 Fax(560-27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2015. 1. 1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자체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로 쉽고 자연스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남·여”로 구분하던 조항을 “양성”으로 통합(제1조, 제2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각 호 조항 신설(제9조 제1호에서 제6호 신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정안	“ 별 지 참 조 ”
산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취	“ 별 지 참 조 ”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공문 : 기획예산실-9752(2015.0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자체재원) 지원관련 회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구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으로,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의”로 한다.

제3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지원

2.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지원
3.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지원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지원

제10조 중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①”은 삭제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①”은 삭제하고, “남녀가”를 “양성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여성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한다.

제27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를 “임기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4조제3항 중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을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여성복지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복지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한다.

제36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적극적 조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u>관계법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p>	<p>제1조(목적) ----- 「<u>양성평등기본법</u>」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p> <p>-----</p> <p>-----</p> <p>-----</p> <p>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p> <p>----- 「<u>양성평등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의 -----</p> <p>제3조(구민의 책무) -----<u>인천광역시 서구민</u>(이하 “구민”이라 한다) -----</p> <p>-----</p> <p>제4조(적극적 조치) -----</p> <p>-----</p> <p>-----<u>관계 법령</u>-----</p> <p>-----</p>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단체 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의 -----
-----단체에 -----
-----.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

1.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지원
2.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지원
3.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지원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지원

제10조(여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남녀평등 의식의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2조(구성) ①·② (생략)

제10조(양성평등주간행사) -----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

 -----.

제14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삭제)-----
 -----양성평등-----

 -----.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삭제)-----
 -----양성이-----

 -----.

제19조(유공자 표창) -----

 -----사람에게 --
 -----.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여성복지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1명씩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 한부모가족복지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선도 등 여성정책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 구의원

4. (생 략)

5. 의료·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6. 여성폭력·상담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
로 한다.

② 제23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③ -----

----- 사람

-----.

1.-----
-----사람

2.-----

----- 사람

3.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6. -----
----- 사람

7. -----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

----- 해당 -----
-----.

② -----
-----전임자 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③ (생략)

제2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

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

기 -----.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정책업무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관계 전문가 -----

-----.

제28조(위원의 해촉) -----

-----임기 전이라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

3. -----

<p>적위원 3분의 <u>2이상</u>의 동의를 있을 때</p>	<p>-----<u>2 이상</u>----- -----</p>
<p>제2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 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수당 등) ----- ----- ----- -----<u>범위</u>----- ----- -----.</p>
<p>제3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에 <u>기타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u>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0조(세부사항) ----- -----<u>그 밖의 위원회의</u> <u>운영에</u>----- ----- -----.</p>
<p>제3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p>	<p>제32조(기금의 조성) ① ----- ----- -----.</p>
<p>1. 2. (생 략) 3. <u>기타 수입금 등</u> ② (생 략)</p>	<p>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 수입금 등</u> 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 ② (생 략)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u>기타수 입금의 범위</u> 안에서 집행한다.</p>	<p>제34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u> <u>의 수입금의 범위</u>----- -----.</p>
<p>제35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p>	<p>제35조(회계공무원) -----</p>

<p>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u>여성복지업무</u> 담당과장</p> <p>2. 기금출납원 : <u>여성복지업무</u> 담당</p> <p>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서구 <u>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 ----- -----.</p> <p>1. -----<u>여성정책업무</u> -----</p> <p>2. -----<u>여성정책업무</u> -----</p> <p>제36조(준용) ----- ----- -----<u>재무회계 규칙</u>----- -----.</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관내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용자실적 저조 (2013.8월 이후 신청자 없음)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 우편번호: 404-83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64) 또는 팩스(560-27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 폐지이유 : 관내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용자 실적이 저조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할 예정 (2013.8월 이후 신청자 없음)
주 요 내 용	○ 기금 폐지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 중 미 상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근거조항 변경 【제4조제5항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23) 또는 Fax(560-271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근거조항 변경[제4조제5항 ⇒ 제4조의 2제4항]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호)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 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 제16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서구”를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주민투표 청구권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민투표청구권자인

지”를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청구인 서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 서명부”로 한다.

제9조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주민투표청구서”를 “주민투표 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 서명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제9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를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로, “청구인대표자”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를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휴대용확성장치”를 “휴대용 확성장치”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제4호서식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16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의 책무) ①<u>인천광역시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u>인천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u>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조(구의 책무) ①<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 ----- ----- -----.</p> <p>②-----<u>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u>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서구에 주소</u>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u>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u>----- ----- <u>관계 법령에 따라</u>----- -----<u>사람은</u>----- -----.</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법 제7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법 제7조제1항에 따라</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u>제4조의2제4항</u></p>

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4. (생략)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

에 따른 -----

3.·4. (현행과 같음)

5. -----
----- 그 밖의 -----

6. 그 밖의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②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제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입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6.10)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
-----청구인 서명부-----

-----.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

②청구인 서명부-----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서-----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
-----제1항에 따라-----
-----.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2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2. 3. (생략)
-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인천광역시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각 호-----

-----.

-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2.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② (현행과 같음)

③-----1명
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사람으로-----
-----.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 ⑧ (생략)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범위-----

⑩ -----
-----운영에-----

제13조(처리기간) ①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대표자-----

②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제12조제7항에 따른-----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
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
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
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
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
써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
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
식을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
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
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
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
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13조제2
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
시판·일간신문 중-----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구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별표1]에 제시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23) 또는 Fax(560-271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구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별표1]에 제시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새마을운동 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지 경작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사랑의 김장나누기 ○ 사랑의 연탄나누기 ○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 어르신여름챙기기(삼계탕 대접)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관 계 법 령 발 취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관내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용자실적 저조 (2013.8월 이후 신청자 없음)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 우편번호: 404-83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64) 또는 팩스(560-27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개 정 이 유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 폐지이유 : 관내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용자 실적이 저조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할 예정 (2013.8월 이후 신청자 없음)
주 요 내 용	○ 기금 폐지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9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항 “위원은 민간위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5,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 -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신분으로도 참여가 불가하여, 위촉직 위원에 기재되어 있는 구의회위원을 삭제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개정안	“별지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별지참조”
관계 법령 발체	“별지참조”
관련 사업 계획	“해당없음”
예산 수반 사항	“해당없음”
기타 참고 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없으면 이 조례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을 “제4조,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대학교수, 구의회의원”을 “대학교수”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및 운영에 관하여”를 “및 운영에”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신청자가”를 “신청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청자를”을 “신청자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의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의 위원으로 -----
-----.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 1. (현행과 같음)
- 2. -----대학교수 -----

---위촉하는 사람---

⑥ -----
-----한 차례만-----

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

-----전임자 임기-----

-----해당직-----
-----. <단서 삭제>-----

⑦ -----
-----1명-----
-----.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및 운영-----
-----에-----
-----.

제13조(실비보상) -----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

제14조(운영세칙) -----
-----운영에-----
-----.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지원계획-----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없으면-----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신청) ① -----

-----.

- 1. 신청자가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 6. (생략)

- 1. 신청자의 -----
-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② -----

<p>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u>신청자를</u>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p> <p>2. ~ 9. (생략)</p> <p>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생략)</p> <p>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 -----.</p> <p>1. <u>신청자가</u> -----</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 ----- ----- -----<u>제외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 지방재정법</p> <p>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5.28.]</p>
--------------	---